

【 8 】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09. 2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양주시 보육조례중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위배되는 제3조3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08. 1. 17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제17조 1항에 예외조항 추가

2. 주요골자

가.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개정 (안 제3조제3항)

나.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시 최초 및 재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예외조항 추가 (안 제17조1항)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보육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최초 위탁시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수탁자와 수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체결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초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다.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 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조례 개정 전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현위원의 잔여임기 까지로 한다.

소관 실·과		가정복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팀장 직위·성명	보육팀장 배용숙
	담당자 성명·전화	배용숙(☎820-2305)

신구조문 대비 표